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14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가. 전국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수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유지·보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음

나. 그러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지 않고 국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무인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전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과태료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려면 안전체계 구축과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교통질서 유지와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은 필수적임
- 2021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고,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 사무가 시·도지사가 관장하게 되면서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설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운영은 경찰에 위탁하여 진행 중임
- 충청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3월 기준 1,09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 중이며, 장비 보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충청북도 교통 무인단속장비 연도별 보유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월말 기준)
합 계(대)	570	855	944	1,041	1,096
고정식(대)	550	835	924	1,022	1,077
이동식(대)	20	22	20	19	19

※ 2025년 경찰 설치 예정 대수는 총 12대(고정10,이동2), 지자체 설치 예상 대수는 확인 불가

※ 2025년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총 1,077대 중 지자체 919대(85.3%), 경찰 158대(14.7%) 설치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장비 구매 및 운영비로 총 76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충청북도 교통 무인단속장비 연도별 보유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천원)	-	1,489,450	1,491,938	2,217,193	2,429,863
구매비(천원)	-	462,000	195,900	543,000	397,000
관리·운영비(천원)	-	1,027,450	1,296,038	1,674,193	2,032,863

※ 2023년 당초예산 구매비 416,000천원, 운영비 1,000,000천원 편성하였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추경 통해 구매비 195,900천원(220,100 ↓), 운영비 1,296,038천원(296,038 ↑) 편성

- 또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3,688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총 1,28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충청북도 교통 무인단속장비 연도별 보유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과건수(건)	589,588	772,081	731,065	690,322
부과금액(천원)	32,002,360	44,998,145	42,966,720	40,244,280
납부금액(천원)	23,705,251	33,410,915	32,683,578	30,518,758

- 그러나 운영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장비 설치 및 유지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교통안전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동일함

- 또한, 정부가 전국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한 과태료는 매년 약 1조 원에 달하며, 이 중 20%만이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되며, 나머지는 특정 용도 없이 정부 재량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 및 건의하려는 것임

**나. 국회 입법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동향**

-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범칙금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음
-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국가 전체적 우선순위에 맞게 활용하고 재정 구조의 단순화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게 됨

- 이후 국회에서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등의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특별회계법안이나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계류 중인 상황임

**<최근 발의된 법안 현황>**

의안명	발의자	제안일자	주요내용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계류)	이상식의원	2024-0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li> <li>•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경비, 교통안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li> </ul>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임기만료폐기)	김관영의원	2017-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li> <li>•도로 및 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교통안전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li> </ul>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박정의원	2017-0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설치</li> <li>•도로 및 도로안전시설의 개선에 사용</li> <li>•재원의 100분의 35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구간의 시설개선을 위한 경비보조에 사용</li> </ul>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임기만료폐기)	김형동의원	2021-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 설치</li> <li>•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관리에 관한 경비, 교통안전 장비 설치 등</li> </ul>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이명수의원	2017-0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 설치</li> <li>•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험, 연구용역 등 경비 등</li> </ul>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안상수의원	2006-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칙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 사용</li> </ul>

-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건의안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계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관련 사항의 건의를 준비 중임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동향>**

의회명	건의안명(발언명)	제안일(발언일)
경기도의회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2025. 2. 17.
경상남도의회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25. 2. 10.
울산광역시의회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범칙금의 지방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5분 자유발언)	2025. 3. 12.
시도지사협의회	자치경찰 자원 조달 방안 -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정부 세입전환” 중심으로	2025. 3. 17.

#### 다. 건의안의 타당성 및 필요성

-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단속장비 설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시설 설치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은 지역 간 교통안전시설 격차의 심화와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환경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되므로 이를 통해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는 매우 타당하며,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에 관련 내용을 강력히 촉구할 필요성은 충분함

#### 라.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교통안전은 지역의 문제이자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투자한 재원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함
- (시의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 수입의 전액이 국세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비춰 볼 때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의 지방세 전환 요구는 시의적절함
- (타당성)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위해 관계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함